

## 역사상 해적과 국제법상 해적 : 바이킹 해적을 중심으로

김 주 식 \*

### 〈목 차〉

- I. 서론
- II. 바이킹의 해적활동
- III. 바이킹 해적과 세계 해적사
- IV. 바이킹 해적과 국제법상의 해적
- V. 결론

## I. 서론

21세기에 이르러 해적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실제로 크고 작은 해적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대표적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이 논문은 2012년 11월 5-7일 개최된 2012 장보고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의 해상 활동과 글로벌 디아스포라”(완도군·한국해양재단 주최,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원·세계디아스포라학회 주관)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인 예로, 동남아와 소말리아의 해적에게 피해를 본 우리나라 상선과 회사가 적지 않다. 해군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2008년도 결의안들과 2009년도 관련 국내 법의 제정을 근거로 2009년부터 청해부대(淸海部隊)를 인도양에 파견하여 국내외 선박을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월 21일에는 청해부대가 아덴 만작전으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sup>1)</sup> 그러나 해적문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해적의 추적과 처벌 및 피해보상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결될 전망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해적 문제는 국제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그 대신 학제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있다. 해적이 전 세계에서 오랜 시기 동안 끊임없이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학은 해적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중요한 역할까지 할 수 있는 학문 중 하나이자 일종의 협력 학문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한 사례로 바이킹의 해적활동을 들 수 있다.

유럽사에서 780년부터 1070년까지의 시기는 흔히 바이킹시대(Age of Vikings 혹은 Viking Age) 혹은 바이킹 이주시대(Viking Migrations)로 일컬어진다.<sup>2)</sup> 이러한 시대구분은 바이킹이 유럽에 끼친 영향과 유럽에서 받은 영향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사실 바이킹이 유럽사에 미친 영향은 유럽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부정적인 것과 유럽 사회를 발전시켰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구분된다.<sup>3)</sup> 긍정적인 영향은 주로 스칸디나비아 출신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유럽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되기 시작하여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어 있다. 그러나 바이킹은 해적과 야만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인식은 아직까지도 문학작품, 놀이시설, 전자게임 등에서 바이킹을 무섭고 난폭한 해적으로 묘사하게 만들고 있다.

바이킹의 해적활동이 어떠했으며, 그 해적활동이 세계사에 출현했던 다른 해적들과 어떤 관계에 있고, 그리고 현대의 해적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은 바이킹 활동의 실체에 대한 연구와 현대 해적문제의 해결에 약간이나마 도

1) “청해부대”,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5%B4%EA%B5%B0\\_%EC%B2%AD%ED%95%B4%EB%B6%80%EB%8C%80](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5%B4%EA%B5%B0_%EC%B2%AD%ED%95%B4%EB%B6%80%EB%8C%80)

2) Age of Vikings의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스웨덴 고고학자 Oscar Montelius(1843-1921)이다. 그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의 3시대구분법과 형식학적 유물연구법을 최초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Eva Ahl, "Aspects on the Fennoman Paradigm in Finnish Archaeology," *Estonian Journal of Archaeology*, 2007, 11, [http://www.kirj.ee/public/Archaeology/2007/Issue\\_2/arch-2007-2-4.pdf](http://www.kirj.ee/public/Archaeology/2007/Issue_2/arch-2007-2-4.pdf).

3) 김주식, “바이킹 해상교역의 성격과 영향,” 『해양평론』, 2007, pp. 72-74를 참조.

움을 줄 수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바이킹에 대한 연구가 극소수인 우리나라<sup>4)</sup>에 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논의의 편의상 바이킹의 다양한 활동, 바이킹선과 항로와 같은 활동수단, 바이킹이 역사에 미친 영향 등은 본고에서 제외시켰다. 그 대신 바이킹의 활동 상황을 해적활동을 중심으로 먼저 정리하였다. 이어서 바이킹의 해적활동을 유럽과 중국과 일본을 위주로 한 아시아의 해적활동과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현대 국제법에서의 해적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후 그 정의와 바이킹 해적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1000년 이전의 역사적 실체를 현대의 실체와 비교하고 또한 특정 시기의 사건을 세계사 전체의 사건들과 비교한다는 이중적인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는 시론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숨길 수 없다.

## II. 바이킹의 해적활동

덴마크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이에는 복잡한 해안, 많은 섬, 그리고 많은 해협과 수로가 있다.<sup>5)</sup>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해적활동에 적합했으며, 따라서 일찍부터 그곳에서 해적활동이 행해졌고 또한 해적소굴도 많았다.

노르웨이 남서부 해안, 외레순(Øresund) 해협, 그리고 발트 해(Baltic Sea)에서는 오랫동안 해적이 횡행하였다. 브레멘 지방의 아담(Adam of Bremen)에 의하면, 남부 노르웨이 해안을 약탈한 해적들이 쉘란 섬(Zealand)에 많은 금을 축적해 놓고 있었다. 쉘란 섬과 핀 섬(Funen 혹은 Fyn) 사이에서는 덴마크 해적이 통과자들에 대해 테러활동을 했다. 페마른 섬(Fehmarn)과 뤼겐 섬(Rügen)은

4) 바이킹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金光洙, “바이킹과 북유럽 상업권,” 『經營史學』, 16, 1977. 12. ; 김성준, “바이킹과 중세 유럽 해양사,” 『海技』, 2000년 8월호. ; 박영배, “바이킹족과 스칸디나비아어,” 『語文學論叢』(국민대어문학연구소), 19, 2002. 2. ; 심재운, “스칸디나비아인의 앵글로-색슨 잉글랜드 침입과 정주,” 『東國史學』, 제40집, 2004. 12. ; 김주식, “바이킹 시대의 해상교역 활동,” 『Strategy 21』(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Winter, Vol. 10, No. 2. ; 김주식, “바이킹 해상교역의 성격과 영향,” 『해양평론』(한국해양대학교), 2007.

5) 이곳에 있는 해협과 수로는 Skagerrak Strait, Kattegat Strait, Oresund Strait, Store Baelt, Samsø Baelt, Lille Baelt, Langleands Baelt, Fermer Baelt로서 모두 8개이다.

누구도 통과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강도들의 소굴이었다. 아일랜드(Ireland)의 무용담과 아이슬란드의 시인이자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스노리 스톨루손(Snorri Sturluson, 1222-12)의 『하임스크링라(Heimskringla)』에 나타나는 해적, 스카게락(Skagerrak) 해협과 카테가트(Kattegat) 해협 및 발트 해에서 바이킹 출신 선원의 연안도시와 내륙도시에 대한 습격, 스칸디나비아 해역에서의 상선 나포, 이 모든 것은 바이킹이 이주하기 전 스칸디나비아 내부의 해적과 관련된 것들이다.<sup>6)</sup>

이주하기 전 스칸디나비아에서의 해적활동은 선원들의 해적질, 연안과 내륙 도시에 대한 습격과 약탈, 상선 나포 등의 활동이 옛 기록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된다. 심지어 이 지역에서는 언제 출현할지 모르는 해적에 대비하기 위해 논밭에 일하러 가는 농부들에게조차 해적의 출현에 대비하여 항상 무기를 휴대하고, 일할 때에도 가능한 무기를 가까이 두라고 권고까지 했다.<sup>7)</sup>

원래 바이킹은 바이킹 시대보다 1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로마제국, 프리시아(Frisia), 브리튼(Britain) 등으로 이주하였다.<sup>8)</sup> 그러나 바이킹은 이주활동을 7-8세기에 일시적으로 중지했다가 8세기 말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하였다. 바이킹의 해적활동은 재개된 이주시대에도 계속되었으며, 바로 이 때부터 3세기 간을 바이킹시대로 부른다.

브리튼 섬의 바이킹 시대는 787년의 어느 날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앵글로색슨 연대기(Anglo-Saxon Chronicle)』에 의하면, 북방의 호사랜드(Horthaland)에서 덴마크 인(Danes)을 태운 3척의 범선이 도셋(Dorset)의 포틀랜드(Portland) 항에 상륙하여, 왕의 사신 베아두헤아르드(Beaduheard)를 죽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신은 바이킹을 웨섹스(Wessex) 해안에 흔히 들어와서 평화롭게 교역하던 무역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말을 달려 마중 나갔었다. 연대기에는 "이것이 잉글랜드를 공격한 최초의 데인 인 선박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운명의 해에 불한당과 같은 침략자들이 라인 강변의 프랑크인 지역 해안으로부터 영국 해협을 건너 단시간에 브리튼 섬으로 건너 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sup>9)</sup>

그런데 바이킹의 서유럽 침공에 대해 보다 자세히 나타나는 것은 793년 6월

6) Gwyn Jones, *The Vikings* (London : The Folio Society, 1997), pp. 159-160.

7) Ibid., pp. 186-187.

8) Ibid., p. 172.

9) 박영배, *op. cit.*, p. 199.

3일이다. 이날 잉글랜드 노섬브리아(Northumbria) 연안 린디스파른(Lindisfarne) 섬의 교회와 수도원이 바이킹의 습격을 받았다. 이 수도원은 잉글랜드의 가장 신성한 기독교 순례지 중 하나였다. 이 사건 직후 6월에 ‘이교도(야만인)’인 노르웨이계 바이킹은 수도사를 학살했으며, 수도원을 소각하고 약탈하였다. 프랑스 샤를마뉴(Charlemagne) 밑에서 일하고 있던 유명한 노섬브리아의 사제이자 학자였던 알쿠인(Alcuin)은 이러한 잔인한 습격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처벌로 생각하였다. 그는 요크(York)의 세인트 피터스 교회(St. Peter's Church) 지붕에서 사순절 기간에 핏방울이 떨어졌다는 소문에서 더 불길한 징조를 발견했다. 그는 영국 기독교의 가장 고귀한 사당 중 하나인 세인트 커스버트(St. Cuthbert)의 교회가 이교도들에 의해 신성모독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애원했다. 이 유명하고 피비린내 나는 행위는 서구에서 바이킹 공격의 서곡 역할을 했다.<sup>10)</sup> 바이킹의 공격은 영향을 주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들의 습격은 교회 같은 부유한 시설을 향한 것이었고, 습격일은 시장이 열리거나 예배자들이 모이는 날이었다. 바이킹은 수도사들의 성배와 장식품 그리고 모인 평신도들의 돈과 물건을 약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포로는 노예가 되었고, 가난한 자는 보호받을 수 없었다.<sup>11)</sup> 사실상 당시 바이킹은 기독교 신앙과 그 상징물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가 갖고 있던 보물만을 원했다.<sup>12)</sup>

8세기 말과 9세기 초에 이와 유사한 많은 노르웨이계 바이킹의 습격이 잉글랜드 북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발생했다. 어떤 습격은 현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행해졌다(Caithness, Shetlands, Orkneys, Hebrides). 794년에는 서덜랜드(Sutherland) 근처 먼크웨어마우스(Monkwearmouth)에서 수도원을 공격하였고, 795년에는 이오나(Iona)의 세인트 콜롬바(St. Columba) 수도원을 공격한 후 레크루(Rechru, 현 Lambay)의 작은 아일랜드 섬으로 내려갔다. 그 해에 노르웨이 인들은 웨일즈(Wales) 해안을 급습하였다. 797년에는 스코틀랜드의 키티르(Kintyre)와 맨 섬(Isle of Man) 및 세인트 패트릭 섬(St. Patrick's Isle)을 약탈하였고, 802년과 803년에는 이오나를 재습격하여 황무지로 만들었다. 1차적인 해적습격은 이러했으며, 9세기가 절정이었다.<sup>13)</sup>

10) Johannes Brøndsted, *op. cit.*, pp. 32-33.

11) Christopher Dyer, *Making a Living in the Middle Ages : the People of Britain 850-1500* (London : Penguin Books, 2003), p. 44.

12) 리더치 루드클리 지음, 우혜령 옮김, 『바바리안 : 야만인 혹은 정복자』(서울 : 뜨인돌, 2004), p. 248.

800년에는 아일랜드(Ireland)를 습격하여 더블린(Dublin) 왕국을 세웠다. 영국에 대한 바이킹의 습격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그리하여 영국 본토의 대부분과 아일랜드 및 북부의 여러 섬들은 모두 바이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바이킹의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거의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파죽지세의 기세로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바이킹은 유럽 대륙의 내륙 깊숙한 곳까지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이 지배는 정복왕 윌리엄(William)이 영국을 침공한 1066년에 종료되었다.

바이킹의 습격을 받은 지역들은 제대로 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8세기 잉글랜드는 소왕국들(Mercia, Wessex, Kent, East Anglia, Northumbria 등)로 존재하고 있었다. 8세기 말 잉글랜드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오프아(Offa of Mercia)가 796년 사망하자, 잉글랜드 남부에서 한 세대 동안 내분이 발생하였다. 에그버트(Egbert of Wessex)가 잉글랜드 남동부와 메르치아(Mercia)를 지배하게 되는 825년까지 잉글랜드 남부의 왕권은 바이킹을 막는데 부적절했던 것이다. 노섬브리아와 스코틀랜드도 9세기에 바이킹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못했다. 샤를마뉴가 814년에 사망하자, 그 아들 루이 경건왕(Louis the Pious) 때 제국이 분할되었고, 프랑크가 약화되었으며, 북부 해안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20년 후 바이킹의 습격이 시작되었으며, 그 세기 나머지 기간 동안 북부 프랑스가 혹독한 공격을 받았다. 습격의 진원지는 덴마크 지역이었으며, 바다에서 대규모 공격이 감행되었다. 아일랜드는 원시적이고 분할 상태라 다루기 쉬운 희생물이 되었다. 800년 직후 노르웨이계 바이킹이 그곳을 침입하여 섬의 서부와 동부 여러 곳을 점령하고 거주하였다.<sup>14)</sup>

바이킹의 습격은 일종의 게릴라 작전으로 전개된 기습이나 약탈 혹은 해적활동이었다. 바이킹선은 수평선에 나타나는가 싶으면 어느새 해변까지 접근해 왔다. 그들은 수평선에 육지나 섬이 보일 때까지 비밀리에 항해했다. 날씨와 해안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민이 그들의 도착 사실을 알고 대비할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는 소수의 사나이들이 해변에 상륙해 수도원을 공격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쓰러지고, 집과 교회는 약탈당하고, 보물은 빼앗기고, 건물은 불길에 휩싸였다. 바이킹 전사들은 가축들을 잡아 재빨리 그들의 배로 돌아갔다. 때로는 여자와 강건한 남자들을 잡아갔는데, 이들은 노예로 팔렸다.<sup>15)</sup> 이에 대해서는 860년 프랑스 침입에 대한 누아무티에(Noimoutier) 섬 출

13) Johannes Brøndsted, *op. cit.*, pp. 33-34.

14) *Ibid.*, pp. 16-17.

신 에르망타리우스(Ermentarius)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배의 척수가 증가하고, 끝없이 이어지며, 또한 증가하는 바이킹의 쇄도가 중단된 적은 없다. 도처에서 기독교도들이 대학살, 방화, 약탈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바이킹은 자신들 앞에 있는 모든 것을 괴멸시키며, 누구도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다. 그들은 보르도(Bordeaux), 페리뇌(Périgneux), 리모즈(Limoges), 앙굴렘(Angoulême), 툴루즈(Toulouse)를 점령했다. 앙제르(Angers), 투르(Tours), 오를레앙(Orléans)은 황무지가 되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배들이 세느 강을 올라가고 있으며, 모든 곳에서 악마(evil)가 더 강해지고 있다. 루앙(Rouen)은 황폐해졌고, 약탈되었으며, 불에 탔다. 파리(Paris), 보배(Beauvais), 모(Meaux)는 점령되었고, 멜룽(Melun)의 요새가 무너졌으며, 샤프트르(Chartres)가 점령되었고, 에브뢰(Evreux)와 베이오(Bayaux)는 약탈되었고, 모든 도시가 바이킹에게 포위되었다.<sup>16)</sup>

바이킹의 해적활동은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이슬람과 조우했을 때에도 예외 없이 나타났다. 바이킹과 이슬람의 충돌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바이킹이 프랑스의 가론느(Garonne) 강과 이베리아 반도의 타구스(Tagis) 강과 과달키비르(Guadalquivir) 강 유역을 공격한 844-845년의 시기이다. 두 번째는 비요른(Björn Ironside)과 하스테인(Hastein)의 지휘 하에 있던 바이킹이 안달루스(Andalus) 동해안,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 심지어 이집트까지 공격하였던 858-861년의 기간이다. 세 번째는 타구스 강과 리스본(Lisbon) 및 갈리시아(Galicia)를 공격한 966-972년의 기간이다.<sup>17)</sup> 이러한 바이킹의 습격과 약탈 활동은 모두 해상 지배권(supremacy)을 바탕으로 바다로부터(from the sea) 시작되었다.<sup>18)</sup>

바이킹의 해적활동이 언제 종료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혹자는 9세기라고 주

15) 이브 코아, 김양미 옮김, 『바이킹 바다의 정복자들』, 사공 디스커버리 총서 (서울 : 시공사, 1997), p. 8과 pp. 28-29.

16) Gwyn Jones, *op. cit.*, p. 202에서 재인용.

17) 1차 시기의 활동 지역은 Qubtil 섬(현 Isla Menor), Coria del Rio, Seville, Talayata(현 Tablada), Qamuna(현 Carmona), Mawrur(현 Morón de la Frontera)이다. 2차 시기의 활동 지역은 Youse, Asturias, Galicia, Jaziral al-Khadra(현 Algeciras), Ebro, Pamplona, Algarve, San Sebastian, Loire 강, Gibraltar 해협, Seville, Murcia, Côte d'Azur, Ligurian Riviera, Pisa, Alexandria, Runa, Rhone 강이다. 3차 시기의 활동 지역은 Lisbon, Shilb 강(현 Silves), Galicia, Santiago de Compostella, Tagus 강, 등이다. David Nicolle, "Moors against Majus : The Defence of Spain and Morocco against the Vikings 848-97 AD," [http://www.osberypublishing.com/articles/medieval\\_world/moDrs\\_against\\_majus](http://www.osberypublishing.com/articles/medieval_world/moDrs_against_majus) (2000. 5) ; Gwyn Jones, *op. cit.*, pp. 200-205를 참조.

18) Johannes Brøndsted, *op. cit.*, p. 17.

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9세기에 바이킹은 직접적인 강탈이나 공물로 귀금속, 장신구, 노예 같은 상품을 요구하면서 꽤거리로 습격 활동을 했다. 이 상품들은 교환 가능한 것들이었으며, 따라서 습격자(raiders)가 교역자(traders)로 변했다.”<sup>19)</sup> 한편, 북구인들이 해적질(piracy)에서 평화로운 교통(peaceful traffic)을 하는 사람으로 점차 전환된 시기가 약 1000년 이후였다는 주장도 있다.<sup>20)</sup> 심지어 13세기에 올라프손(Rögnvaldr Ólafsson)과 구아손(Harald Guarson)처럼 해적(pirates)에서 존경받고 부유한 기독교 왕자들(Christian princes)로 변한 사람들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sup>21)</sup>

이 주장들에서 주목할 만한 문구는 바이킹이 해적에서 다른 직업인이나 신분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해적에서 교역자로 변했다는 두 가지 주장은 해적활동과 교역활동이 바이킹의 활동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바이킹은 상황이 유리할 때에는 기꺼이 상인이 되었지만, 바다가 방어되지 않고 도시가 개방되어 있을 때면 해적으로 변했다. 기항지가 약하면 공격했고, 너무 강하면 교역을 했다. 『앵글로색슨 연대기』에 나타나는 최초의 사례는 호달란드(Hordalanders)가 도체스터(Dorchester)에서 왕의 관리를 만난 사실이다. 그 관리는 그들이 상인이라 생각하고 관습에 따라 교역 준비를 위해 왕실 장원으로 안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거친 상인이었고, 이유 없이 그들을 죽였다. 이후 노르웨이계 바이킹들이 잉글랜드에 온 것은 약탈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쨌든 강탈은 강탈이며, 서유럽에는 그에 관한 기록이 많다.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는 북부 정복자보다 우수한 학식, 예술, 부, 문화를 갖고 있어도 수적으로 열세이나 기동성 있고 힘이 넘치는 적에게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다.<sup>22)</sup>

바이킹이 이웃과 얼마나 각별한 관계에 있었는지 혹은 폭력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안팎에서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sup>23)</sup> 바이킹은 바다에서 해적(pirates)으로 명성을 얻었다. 실제로 바이킹의 원뜻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

19) Christopher Dyer, *op. cit.*, pp. 45–46.

20) G. J. Marcus, "The Greenland Trade-route," *The Economic History Review*, Vol. IX, No. 3, April 1957, p. 72.

21) Benjamin Hudson, *Viking Pirates and Christian Princes : Dynasty, Religion and Empire in the North Atlantic* (Oxford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210.

22) Gwyn Jones, *op. cit.*, pp. 186–187. ; Brian Todd Carey, "Technical marvels, Viking longships sailed seas and rivers, or served as floating battleships," *Military History*, 19, No. 6 (2003), p. 70.

23) Clare Downham, *op. cit.*, p. 2.



만, 그 중에는 항해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고 대부분의 귀중한 소지품과 배를 빼앗기 위해 '배를 타고 다니는 해적(seafaring pirates)'이라는 뜻도 있었다.<sup>24)</sup> 바이킹 거주지역의 지리적 조건도 그들의 해적활동에 기여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인접한 대륙의 중심부에 쉽사리 도달할 수 있다는 스칸디나비아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바이킹은 비교적 용이하게 해적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25)</sup>

바이킹이 해적활동을 한 이유는 대체로 그들의 전통과 관습으로 설명되고 있다. 바이킹의 교역, 해적활동, 토지 획득은 바이킹시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북유럽에서 전개되어 온 활동이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가능하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농경사회에서 그들은 자기 어린애들을 위해 땅이 필요했고, 가축을 위해 초지가 필요했다. 무역로가 개방된 시기에는 은을 열망했으며, 은으로 가재도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사회계층적, 호전적, 부족적인 사회에서 지도자들은 명성, 권력, 부, 생계수단을 활동으로 추구했다. 바람이 강하고 큰 파로에(Faroes) 목장으로, 살기에 적합한 아이슬란드의 초지로, 그린란드 서부 피요르드에 있는 양질의 목초지로 그들을 이끈 것은 토지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들은 이익과 물질에 대한 욕구라는 야망도 갖고 있었다. 바이킹은 단지 이를 위해서만 명성을 날렸고, 이 목적을 위해 배를 건조하였고, 시장도시를 건설했으며, 무역로를 발전시켰고, 영향권을 유지했으며, 해외 정복 활동을 하였고, 해적질과 함께 상업적 행동을 강화했다.<sup>26)</sup> 당시 바이킹에게는 대양을 이동해야 할 필요성과 야망이 있었으며, 의지와 강인함 및 기술수단도 보유하고 있었다.<sup>27)</sup>

그러나 해적 활동은 바이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야기하였다. 해적활동에 대한 언급의 경우, 바이킹이 약탈과 노예추구에서 특히 무자비하고, 파괴적이며,

24) Brian Todd Carey, *op. cit.*, p. 71

25) 이브 코아, 김미정 옮김, *op. cit.*, p. 31

26) Gwyn Jones, *op. cit.*, pp. 2-3.

27) Gwyn Jones, *op. cit.*, p. 196. 이러한 이유로 바이킹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1923년에 브레마(R. L. Brema)는 바이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호탕하고 대담한 민족, 순진하고 용감한 성격의 남녀. 육체가 강건하고, 균형이 맞으며, 모두 용모가 아름답고, 고전적인 미를 가진 사람도 많다. 그들의 행동거지는 꾸밈이 없고, 소박하며, 마음은 사랑, 기사도정신, 용기, 자유, 정의 같은 자세한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데 민감하다. --- 항상 솔직하고, 누구와 사귀어도 쾌활하며, 신뢰를 배반하는 일 없고,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전투에서는 두려운 것을 모르고, 우정을 어기는 일이 없는 사람들 --- 명예, 기사도정신, 그리고 자유의 존중이라는 3가지 미덕은 우리가 북구의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불멸의 유산 중 일부이다.” Jacqueline Simpson, 早野勝巳 譯, 『ヴァイキングの世界』(東京: 東京書籍株式會社, 1982), p. 13에서 재인용.

무정한 이교도 바바리안이었다는 이미지가 지배자들과 기독교인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적에 대한 이러한 악마화는 다른 전쟁보다 너무나 효과적으로 설정되어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세 초 스칸디나비아인들에 대해 익숙한 근대적 이미지는 황폐화시키기 위해 배에서 뛰어내리는 투구 쓴 전사가 되었다.<sup>28)</sup>

이러한 현상은 근대와 현대에도 나타났다. 1930년대 토마스 켄드릭 경(Sir Thomas Kendrick)은 바이킹을 ‘야수 같은 야만인’, ‘무뢰배 도적,’ ‘문명세계의 외연을 범하는 악당,’ ‘피에 굶주린 혐오스러운 야만인, 방화와 살육이라는 파렴치하고 변호할 여지가 없는 비리를 감행하는 사회의 적’으로 표현하였다.<sup>29)</sup> 또한 현대의 한 학자는 바이킹의 활동을 침략(invasion)과 정복(conquer)이 아닌 습격(raid), 공격(attack), 해적(pirates 혹은 freebooters), 해적함대(pirate fleets)라는 용어로 묘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야만적 행위(brutality)와 바다에서 온 잔인한 사람(cruel men)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sup>30)</sup> 이러한 양극의 논쟁은 어느 한편으로 결론내리기 어렵다. 한마디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끝없는 학술적 소송이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II. 바이킹 해적과 세계 해적사

고대 유럽에서는 지중해 동부가 해적의 활동무대였다. 기원전 2천 년에는 크레타(Crete) 섬과 아라비아 해에서 이집트 선박들이 해적의 습격을 받았고, 기원전 12세기경에는 페니키아 상선들이 해적의 목표물이 되었다. 해적은 농토가 부족한 곳에 사는 그리스인과 크레타인이었다. 로마시대에는 카르타고(Carthage)의 후예들이 로마 식민지에서 로마로 운송되는 공물을 대상으로 해적활동을 했다. 해적활동이 활발해지자, 로마는 67년에 폼페이우스(Pompeius)에게 600척의 갤리와 12만 명의 병력을 주어 해적전쟁(Guerre des pirates)을 수행하게 했다.

28) Christopher Dyer, *op. cit.*, p. 45.

29) Jacqueline Simpson, 早野勝巳 譯, *op. cit.*, p. 13.

30) David Nicolle, "Moors against Majus : The Defence of Spain and Morocco against the Vikings 848-97 AD," [http://www.osberypublishing.com/articles/medieval\\_world/moDrs\\_against\\_majus](http://www.osberypublishing.com/articles/medieval_world/moDrs_against_majus) (2000. 5). 또한 바이킹을 Viking colonists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Benjamin Hudson, *op. cit.*, p. vii.).

로마시대의 해적은 지중해 무역이 쇠퇴하여 약탈 대상을 찾을 수 없게 된 4세기 말에 사라졌다.

대항해시대에는 후발주자였던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의 상인과 선원들이 선두주자인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양 연안의 무역선과 식민지에서 해적활동을 감행하였다. 17세기 초에 평화시대가 도래하자 사략꾼, 모험가, 퇴역군인, 실직 선원 등이 황금과 모험을 추구하여 카리브 해의 서인도제도로 몰려들어 해적활동을 했다. 스페인계승전쟁(1701-14)을 계기로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동맹이 체결되자, 해적의 활동무대는 카리브 해와 서인도제도에서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서해안, 마다가스카르 섬, 인도양 등으로 이동하였다.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서는 15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 바바리안(Barbarians)으로 불리는 이슬람 해적들이 기독교도 선박을 괴롭혔다.<sup>31)</sup>

대부분의 서구 해적은 다양한 국적을 보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별도의 집단이 었기 때문에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선박이나 해안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대항해 시대에 이은 식민지 경쟁시대에는 어느 한 국가의 해적들이 적대적인 국가의 선박이나 식민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의 사략선(私掠船)이었다. 한편 바이킹의 경우처럼 해적활동을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관습이자 생활 형태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시대의 서구 해적이 자국의 연안이나 선박을 공격하는 경우는 대체로 아주 드물었다.<sup>32)</sup>

중국의 해적은 기원 100년 이후에 시작하여 현대까지 계속 출현하고 있다.<sup>33)</sup> 그들의 활동 장소는 북부연안지역, 중부연안지역, 남부연안지역, 대만, 일본과 동남아 같은 외국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소성(江蘇省) 남부와 양절(兩浙) 지역 즉 중부연안지역이었다. 중국 해적은 주로 자국 연안이나 선

31) 이상은 김주식, “海賊의 어제와 오늘,” 『海洋戰略』, 제100호, 1998. 9, pp. 253-259를 요약한 것이다.

32) 金州植, “中國 海賊의 歷史的 特徵,” 『장보고 연구논총』, 장보고연구 IV (해군해양연구소), 2005, pp. 54-59.

33) 중국 해적이 당대(唐代) 이후에 출현했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의 해적은 기원 100년 이후에 출현했으나 연해지역의 반란에 가까웠고, 동남아와 서아시아 일대와의 무역이 행해지던 당대(618-907)부터 비로소 해상 약탈을 위주로 한 해적들의 활동이 대두했다.” 李瑾明, “南宋時代 福建一帶의 海賊과 地域社會,” 『東洋史研究』 66, 1999. 4, pp. 135-136.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부언하고 있다. “그러나 남송 초에는 해적이 연안지방에 상륙하여 약탈만 함으로써 해상에 존재하며 선박을 이용하여 움직이고 있을 뿐, 사실상 주된 활동 기간이 해상이 아닌 육상이었고, 따라서 그 활동 모습이 내륙의 농민반란과 구별이 거의 안 되었다.” (Ibid., pp. 142-143). 농민반란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 해적도 해적으로 간주하고 있어 앞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박을 공격하였다. 게다가 정규군인 관군(官軍)과 전투를 하기도 했다. 중국 해적은 지상세력과 동맹하여 무장반란을 일으키고, 외세에 대해 무장저항활동을 하였다. 또한 해금령(海禁令)과 천계령(遷界令)이 반포된 상황에서 반상반도(半商半徒)나 역상역도(亦商亦徒)로서 밀무역을 하고, 항로를 개척했으며, 해외활동을 하기도 했다.<sup>34)</sup> 중국학계에서도 자본주의의 맹아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자국민의 해양사를 밝히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해적 구성원이 시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관리와 상인 그리고 승려와 유생 등까지도 포함하는 출신성분의 다양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이다.<sup>35)</sup>

고대 일본의 해적은 국가 권력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해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세토 나이카이(瀬戸内海)의 해상세력이었다.<sup>36)</sup> 고대 말 이후에 일본 해적은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다양화되면서 도서지방에 기반을 둔 영주계층을 중심으로 교역에 적극적으로 종사하였다. 당시 일본 해적은 정권이나 권력에 이단적이거나 저항하는 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다를 배경으로 등장한 해상집단이였다. 그 행위의 목적은 해로를 장악하고 세력을 유지하면서 해로로 운반되는 물품의 약탈을 통한 경제적 이득에 있었다. 가마쿠라(鎌倉)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본 해적활동의 확대는 사회정치적 혼란과 일맥상통하였다. 그리고 13세기 일본 해적은 세토 나이카이에서 수세기동안 축적해 온 항해기술력을 발판삼아 일본 내해를 벗어나 고려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고려와 중국을 약탈하는 왜구로 변해 갔다. 따라서 해적과 왜구는 해상권 확보와 상품, 물자, 교역품 등의 장악을 주목적으로 하는 동질의 해적집단이였다. 동아시아 해역에서 13세기부터 16세기의 일본 해적에는 해상의 경계를 넘어 외국에서 재물을 약탈하는 왜구와 세토 나이카이에서 선박의 안전 항해를 보장하면서 일정액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서연안의 해상세력이 있었다. 더 나아가 이들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에는 주인선(朱印船)을 타고 대양을 항해하며 교역을 주관하던 상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본 해적은 시기별로 약탈행위와 교역활동을 오가면서 이중의 생활을 수행하는 자유분방한 해상세력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37)</sup>

일본학계는 왜구가 중국 연안에서 활동하고 중국 해적이 일본까지 와서 활동

34) 金州植, "中國 海賊의 歷史的 特徵," pp. 54-59를 참조.

35) 김주식, "한중일 삼국의 해적사 연구와 장보고시대 해적 연구의 현황," 「장보고연구논총」, 장보고연구 II (해군해양연구소, 2003), pp. 124-125.

36) 김보한, "해적과 약탈경제 : 중세 일본 해적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20집 (2009), p. 537.

37) Ibid., pp. 546-547.

한 시기의 해적을 자국민의 해양활동사에 대한 고찰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하였다. 명치유신 이후 근대사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선동과 계몽을 위해 자국민의 해적활동을 찬란한 해양사로 미화하였다. 일본학계가 해적을 이와 같이 연구하는 데에는 일본 수군의 전신이 해적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해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sup>38)</sup>

이러한 세계해적사와 비교할 때, 바이킹 시대의 바이킹 해적은 몇 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활동 장소가 달랐다. 세계 해적사에 나타나는 해적의 활동 장소는 오래된 해적의 전통이나 역사를 가진 곳, 치안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곳, 경제적 빈곤이 심한 곳, 출현과 은닉 및 식량 조달이 쉬운 다도해나 밀림, 상선이나 어선이 자주 왕래하는 주요 해상교통로나 해협 그리고 연안이나 섬 등이었다.<sup>39)</sup> 그러나 바이킹 해적은 항해하다가 도착하는 곳을 약탈 목표지로 삼았으며, 해안은 물론 강을 타고 내륙 깊숙한 곳까지 항해하여 눈에 띄는 마을과 도시를 약탈 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해적 활동의 양상이 달랐다. 일반적으로 해적은 상선이나 어선과 같은 선박이나 연해 지역을 약탈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바이킹 해적의 경우에는 선박과 연해지역은 물론 강 유역과 깊숙한 내륙지역의 촌락과 도시, 수도원과 교회, 그리고 주민들까지도 약탈 대상으로 삼았다.

셋째, 해적활동 이후의 행동이 달랐다. 해적은 약탈한 후 본거지로 돌아갔으며, 소탕되거나 해산될 때까지 해적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바이킹 해적 중에는 해적활동을 한 후 본거지로 돌아가지 않고 약탈 지역에 정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잉글랜드, 아일랜드, 프랑스 등 많은 지역에서 바이킹이 건설한 국가가 출현했으며, 주민들과 동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38) 김주식, “한중일 삼국의 해적사 연구와 장보고시대 해적 연구의 현황,” p. 125.

39) 김주식, “海賊의 어제와 오늘,” p. 264.

## IV. 바이킹 해적과 현대 국제법상의 해적

해적에 대한 정의는 지역과 시대마다 다르다. 많은 국가는 자국 현실을 감안하여 서로 다른 해적개념을 자국법에 반영했으며, 따라서 국가들의 관행과 관습 국제법은 해적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강탈행위가 영해 내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해 발생하더라도 지방 귀족이 해적을 추적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해적법을 인정했으며, 해상에서 비합법적인 모든 무장 폭력 행위를 해적으로 간주했다.<sup>40)</sup>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해적을 정의하는 데 사적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니었으며, 해악을 끼쳐 불법적 목적을 만족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더라도 무고한 상선을 파괴하거나 침몰시키면 그것이 곧 해적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1937년의 니온(Nyon) 협정에 따라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를 포함한 9개국은 그 행위가 약탈하려는 의도 없이 그리고 영해 내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상선에 대한 해상무력행위를 해적으로 간주했다. 노르웨이와 지중해 인접국가들은 바이킹과 바바리안 해적(Barbary Corsairs)이 실제로 해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서 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sup>41)</sup>

해적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는 1958년 공해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Law of the Sea, UNCLOS)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로 차이가 없다.

〈제101조 해적 행위의 정의〉

- a)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다음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혹은 약탈행위
  - i) 공해상의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혹은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
  - ii) 국가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선박, 항공기, 사람이나 재산
- b) 어느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가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40) 영국해상보험법(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에서는 “선상반란(mutiny)을 일으킨 승객이나 연안으로부터 선박을 공격하는 폭도(rioters)도 해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원, “영국법상 해적행위 개념의 재검토,” 『法學研究』(부산대학교), 제52권 제4호, 통권 70호, 2011. 11. p. 16, note 7에서 재인용.

41) 吳泰坤, “국제법상 해적 개념 규정의 신전개,” 『國際法學會論叢』, 제52권 제3호, 통권제109호, 2007. 12. pp. 170-171.

c) a)와 b)에 규정된 행위를 교사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모든 행위

〈제102조 승무원이 반란을 일으킨 군함, 정부선박, 정부항공기에 의한 해적 행위〉  
 승무원이 반란을 일으켜 그 지배하에 있는 군함, 정부선박, 정부항공기가 제101조에 정의된 해적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103조 해적선, 해적항공기의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를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자가 제101조에 언급된 어느 한 행위를 목적으로 그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선박 또는 항공기는 해적선이나 해적항공기로 본다. 선박이나 항공기는 이러한 행위를 위하여 사용된 경우로서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의 지배하에 있는 한 또한 같다.<sup>42)</sup>

이 국제법의 해적 정의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약탈 의사와 획득 욕망이 없이 단순한 중오심이나 복수심에 의한 것도 해적행위이며, 사적인 목적(private ends)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고,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의 권위에 대한 공격이 있어야만 하며, 원칙적으로 사선(private ships)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고, 공해나 국가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해야 하며, 승조원이나 승객이 일으킨 해상폭동은 해적에서 제외된다.<sup>43)</sup>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적에 대한 관습 국제법을 일반화 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해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폭력적 범죄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해상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1988년 3월 10일 로마 협약(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이 마련되었다. 로마 협약은 무력이나 위협으로 선박을 탈취하거나 통제권을 빼앗는 것, 선박 항해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선박 안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안전한 항해를 위협할 정도로 선박 또는 선적물을 파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 선박을 파괴할 수도 있는 장치나 물체를 설치하는 것, 안전 항해를 위협할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제공하는 것, 위와 관련된 행동을 함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라도 부상을 입히거나 살해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 협약도 국제적 호응을 얻는 데 실패하였다.<sup>44)</sup>

42) 외무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비준공포본) 및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1996) ; 김주식, “海賊의 어제와 오늘,” p. 250.

43) 吳泰坤, *op. cit.*, pp. 157-159.

아시아 지역에서는 2004년 11월 11일 동경에서 「아시아에서의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ReCCAP)」이 채택되었다. 이 지역협력협정의 제1조 제1항은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공해상의 다른 선박 또는 그 선박 내의 사람이나 재산과 국가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선박,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어느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가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와 이의 교사와 고의적 방조행위까지를 해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서 사적 목적으로 범하는 선박이나 그 선박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어느 선박이 선박에 대한 무장 강도행위가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와 이의 교사와 고의적 방조행위까지를 무장강도행위로 규정하였다.<sup>45)</sup>

현대의 해적 행위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항구와 투모지를 약탈하고 공격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중소 규모의 항구에서 발생하며, 낮은 수준의 무장 강탈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공해나 영해에서 군함과 일반 선박을 약탈하고 강탈하는 유형이다. 이것은 모선(母船)을 보유한 조직적인 해적들이 일으키는 가장 일반적인 해적 유형으로서 중간 수준의 무장 강탈이나 약탈로 볼 수 있으며, 상해나 살인을 수반하기도 한다. 셋째, 함선을 납치하여 불법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장 등록하는 유형이다. 이것은 납치한 함선에서 화물을 하역한 후 제3국에서 화물과 선박을 재등록하여 매매하는 중대한 납치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고도로 훈련된 해적들이 재원과 조직력을 이용하는 국제범죄행위이다. 넷째, 범선(帆船)을 약탈하는 유형이다. 이 때의 범선은 현금과 처분하기 쉬운 개인 물품을 싣고 항해하는 사선(私船)을 주로 의미하며, 세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유령선박의 유형이다. 함선을 납치하여 제3국의 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한 이 유령선박 현상은 폭력성이 강하고 저항 선원들에게 무기를 이용한 폭력까지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sup>46)</sup>

44) Ibid., p. 164.

45) Ibid., pp. 154-155.

46) 해군본부 편, "해적 행위의 세계적 양상," 「技術情報」, 제249호(2000, 11), pp. 94-96.



해적행위는 국가별로 볼 때에도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는 남중국해와 인도네시아 및 인도양에서 많이 발생하는 아시아 형태이다. 이것은 선박에 몰래 침입하여 선내의 현금, 라디오, 식량, 승무원의 귀중품 등을 가능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훔쳐가는 형태이다. 둘째는 남아메리카 형태나 서아프리카 형태로 불리는 형태이다. 이것은 부두나 항구 밖에서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여 무기를 갖고 습격하는 형태이다. 셋째는 극동아시아 형태이다. 이것은 선박을 빼앗는 행위로서 1982년 후반기부터 발생하고 있다. 넷째는 지중해 연안과 아프리카 연안 형태이다. 소말리아 해적의 경우처럼, 이것은 군사적 또는 정치적 성격의 테러리스트 형태나 군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는 동남아 형태이다. 이것은 항행중인 선박을 습격하여 승무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현금, 귀중품, 화물과 선박마저 약탈하는 일종의 하이재킹 형태이다.<sup>47)</sup>

이러한 해적에 대한 국제법의 개념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바이킹 해적은 국제법의 개념에 부합되는 점과 차이가 나는 점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이 요구하는 약탈 의사와 획득 욕망의 요건은 바이킹에게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이킹의 항해 목적에 대해서는 3가지(교역·해적 행위·토지 획득)라는 주장과 4가지(개인적인 해적 습격·정치적 원정·식민화를 위한 모험·상업적 진출)라는 주장이 있다.<sup>48)</sup> 항해 목적이 몇 가지이건 간에 두 주장에는 해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증오심과 복수심에 의한 해적 행위라는 요건은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 어렵지만, 여러 차례의 장기간 무력 충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사적인 목적이라는 조건은 국제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바이킹이 추구하고 갈망한 것들이 개인, 가족, 부족에게 필요한 것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적인 목적이 바이킹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49)</sup> 선박의 권위에 대한 공격이라는 조건은 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분탕질하며, 살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왕이나 지방 유력자의 군대와 민병들과 전투를 했기 때문이다. 사선(私船)에 의한 해적 행위는 규명하기 어렵다. 바이킹이 이용한 선박들의 소유주가 개인, 부족, 국왕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적함대(pirate fleet)로 불릴 정도로 많은 선박이 동원된 사례들로 볼 때, 그 해적함대가 개인 소유 선박들

47) 吳泰坤, *op. cit.*, pp. 161-162.

48) 전자는 Gwyn Jones, *op. cit.*, p. 3에 그리고 후자는 Johannes Brøndsted, *op. cit.*, p. 31에 각각 나타나고 있다.

49) 그러나 바이킹 시대 초기에 덴마크계 바이킹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왕의 후원을 받아 해적 활동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Gwyn Jones, *op. cit.*, p. xv.

로만 편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공해나 국가 관할권에 속하지 않은 곳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바이킹 해적과 전혀 무관하다. 바이킹이 다른 지역을 침입하였고, 섬과 해안지역 및 내륙지역에서도 약탈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선박에 대한 불법적 폭력 행위라는 조건도 바이킹의 경우에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킹의 경우, 선박을 공격했다는 것보다 촌락과 도시 그리고 교회와 수도원을 공격했다는 자료가 훨씬 더 많다.

한편 영국의 해상보험법과 판례는 해적 행위의 구비 요소를 손해나 손실이 초래되거나 초래된 위험이 있을 것, 반드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동기가 사적이어야 할 것, 폭력이 행사되거나 그러한 폭력 행사의 위험이 있을 것, 그리고 해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sup>50)</sup> 바이킹은 이 중에서 손해나 손실의 초래와 폭력 행사의 구비 요소를 충족하고 있지만, 사적인 동기와 해상에서의 활동이라는 제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볼 때, 바이킹의 해적 활동은 국제법을 분석할 때 제시되는 해적 활동의 유형과 국가별 형태에도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V. 결 론

스칸디나비아의 연안과 해역은 이주시대 이전부터 지리적 조건 때문에 해적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다. 바이킹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던 8세기 후반기부터 북해를 횡단하여 브리튼 제도를 습격하기 시작하였다. 11세기 후반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유럽 대륙의 모든 연안을 습격하였다. 일종의 게릴라 작전으로 전개된 해적 활동은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이슬람과 조우했을 때에도 실시되었다. 그들은 도착한 지역의 방어가 약하면 약탈을 하고 강하면 교역을 하는 이중적인 활동 양상을 보였다. 해적질을 당한 유럽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이킹은 잔인하고 야만적인 해적이었다. 해적 활동을 한 바이킹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해적

50) 이정원, *op. cit.*, p. 167.

활동을 하는 보통 인간이었다. 이러한 양극의 논쟁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끝없는 소송이 학술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해적은 다양한 국적과 신분을 보유한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주로 해상무역의 중심지나 선박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활동했으며, 국적을 불문하고 선박과 연안 지역 및 섬을 주로 공격하였다. 역시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된 중국 해적은 주로 연안 지역과 선박을 공격했으며, 무장 반란·반외세 무장 저항 활동·밀무역(半商半徒 혹은 亦商亦徒)·항로 개척·해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일본 해적은 제해권 확보와 교역품을 장악하기 위해 약탈과 교역의 이중생활을 하고 있던 비교적 자유로운 해상 세력이었다. 반면에 바이킹은 항해로 도착한 곳에서 그리고 내륙 깊숙한 강 유역에서 주로 촌락과 도시 그리고 교회와 수도원을 대상으로 해적 활동을 했으며, 일부는 해적 활동을 한 곳에 정착하기도 했다. 따라서 바이킹 해적은 활동지역, 활동 양상, 해적활동 이후의 행동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세계 해적사에 나타나는 다른 해적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바이킹의 해적 활동은 현대 국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적 행위와 일치되는 점과 일치되지 않는 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한다. 국제 해양법이 요구하고 있는 해적의 구비 조건 중에서 약탈 의사, 획득 욕망, 증오와 복수를 위한 행동, 사적인 목적은 바이킹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선박의 권위에 대한 공격, 사선에 의한 행위, 해안과 섬에서의 행위, 선박에 대한 불법적 폭력 활동의 구비 조건들도 바이킹의 해적 활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바이킹의 해적 활동에서는 공해나 국가 관할권 밖에서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사선이 아닌 부족이나 지방 유력자 혹은 국왕의 선박을 이용하여 해적활동을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해적에 대한 현대 국제법상의 개념 정의와는 달리, 바이킹은 외국 영해를 침범했으며, 타국의 해안과 섬에 상륙했으며, 내륙 깊숙한 곳까지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선박보다는 촌락과 도시 그리고 교회와 수도원을 주로 공격했다. 특이하게도 자신들이 해적질을 한 곳에 정착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 바이킹 시대에 바이킹이 해적 활동을 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며, 일반인들도 대체로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역사에서 나타난 적이 있는 해적과 국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적이 동시에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뜻한다. 해적의 역사적 실체와 국제법적 실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학에서 해적으로 지칭되는 부류 중 상당수는 해적으로 간주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해상으로부터의 침입자와 약탈자로 불릴 수 있는 그들은 자국민의 생명과 재화에 대한 약탈과 강탈 그리고 파괴와 폭력행위, 영토와 영해의 침범, 불법무기소지, 무허가 상륙과 정박, 불법적인 선박 운항 등의 행위에 대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해에서 적발된 해적이 제3국의 영해 내로 진입하면 추적권이 사라지며, 해적 활동으로 획득한 선박과 재화 및 인명이 항구나 내륙지역에 있을 경우 피해자나 피해국은 외교·도의적 항의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해적이라는 역사적 실체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의 형식에 자승자박되거나 자국 이익의 우선주의 때문에, 해적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국제법 학계는 해적의 현행 관습이나 관례 그리고 사실에만 몰입하지 않고 해적 개념을 영해와 내륙 깊숙한 곳과 선박 이외의 대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이킹 해적은 이 필요성에 대한 근거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국제법에 역사적 전거를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대 국제법에 해적의 역사적 사례가 반영되어야 하며, 그렇게 반영된다면 해적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역사는 과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주는 불멸의 생명체인 것이다.

## 참고문헌

- Ahl, Eva, "Aspects on the Fennoman Paradigm in Finnish Archaeology," *Estonian Journal of Archaeology*, 2007. 11, [http://www.kirj.ee/public/Archaeology/2007/Issue\\_2/arch-2007-2-4.pdf](http://www.kirj.ee/public/Archaeology/2007/Issue_2/arch-2007-2-4.pdf).
- Brønsted, Johannes, tr. Kalle Skov, *The Vikings* (London : Penguin Books, 1960).
- Carey, Brian Todd, "Technical marvels, Viking longships sailed seas and rivers, or served as floating battleships," *Military History*, 19, No. 6 (2003).
- Downham, Clare, "Viking Ethnicities : A Historiographic Overview," *History Compass*, 10, [http://www.academia.edu/1499804/Viking\\_Ethnicities\\_A\\_historiographic\\_overview](http://www.academia.edu/1499804/Viking_Ethnicities_A_historiographic_overview)
- Dyer, Christopher, *Making a Living in the Middle Ages : the People of Britain 850-1500* (London : Penguin Books, 2003)..
- Hudson, Benjamin, *Viking Pirates and Christian Princes : Dynasty, Religion*

- and Empire in the North Atlantic* (Oxford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Jones, Gwyn, *The Vikings* (London : The Folio Society, 1997).
- Marcus, G. J., "The Greenland Trade-route," *The Economic History Review*, Vol. IX, No. 3, April 1957.
- Nicolle, David, "Moors against Majus : The Defence of Spain and Morocco against the Vikings 848-97 AD," [http://www.osberypublishing.com/articles/medieval\\_world/moDrs\\_against\\_majus](http://www.osberypublishing.com/articles/medieval_world/moDrs_against_majus) (2000. 5)
- Simpson, Jacqueline, 早野勝巳 譯, 『ヴァイキングの世界』(東京 : 東京書籍株式會社, 1982).
- 金光洙, "바이킹과 북유럽 상업권," 『經營史學』, 16, 1977. 12.
- 김보한, "해적과 약탈경제 : 중세 일본 해적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20집 (2009).
- 김성준, "바이킹과 중세 유럽 해양사," 『海技』, 2000년 8월호.
- 김주식, "바이킹 시대의 해상교역 활동," 『Strategy 21』(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Winter, Vol. 10, No. 2.
- 김주식, "바이킹 해상교역의 성격과 영향," 『해양평론』(한국해양대학교), 2007.
- 金州植, "中國 海賊의 歷史的 特徵," 『장보고 연구논총』, 장보고연구 IV (해군해양연구소), 2005.
- 김주식, "한중일 삼국의 해적사 연구와 장보고시대 해적 연구의 현황," 『장보고연구논총』, 장보고연구 II (해군해양연구소, 2003).
- 김주식, "海賊의 어제와 오늘," 『海洋戰略』, 제100호, 1998. 9
- 리더치 루드글리 지음, 우혜령 옮김, 『바바리안 : 야만인 혹은 정복자』(서울 : 뜨인돌, 2004).
- 박영배, "바이킹족과 스칸디나비아어," 『語文學論叢』(국민대어문학연구소), 19, 2002. 2.
- 심재운, "스칸디나비아인의 앵글로-색슨 잉글랜드 침입과 정주," 『東國史學』, 제40집, 2004. 12.
- 吳泰坤, "국제법상 해적 개념 규정의 신전개," 『國際法學會論叢』, 제52권 제3호, 통권 제 109호, 2007. 12.
- 외무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비준공포본) 및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1996).
- 李瑾明, "南宋時代 福建一帶의 海賊과 地域社會," 『東洋史研究』 66, 1999. 4.
- 이브 코아, 김양미 옮김, 『바이킹 바다의 정복자들』, 사공 디스커버리 총서 (서울 : 시공사, 1997).
- 이정원, "영국법상 해적행위 개념의 재검토," 『法學研究』(부산대학교), 제52권 제4호, 통권 70호, 2011. 11.
- 해군본부 편, "해적 행위의 세계적 양상," 『技術情報』, 제249호 (2000. 11).

Abstract

## Pirates in History and International Law Centering around the Viking Pirates

Kim Joo-Sik\*

History, demonstrating convincingly that pirates have arisen continuously for a lengthy period of time throughout the world, is able to become a cooperative study of international law in terms of pirates matters ; Viking pirates. There are beneficial topics for the study of true nature of viking activities and the settlement of present pirates matters ; How were the pirates activities of Vikings, What sort of relations do they have between Vikings and other pirates which have arisen in world history, What are the differences compared to present concept of pirates.

There were active pirates activities in the coast and waters of Scandinavia even before the period of the Migration Age because of geographical condition. With those experiences, Vikings began to ambush Britain Islands sailing across the North Sea since the late 8C, ages of migration in earnest. They ambushed all coasts of the European Continent expending boundary until the late of 11C. Pirate activities in a sort of guerrilla operations were operated when they encountered Islams in the Iberian Peninsula and the coast of North Africa.

They showed twofold attitudes ; if the defence of the region and sea was weak, they plundered, or if strong, traded. In plundered europeans' position, Vikings were pirates with cruelty and barbarians. In vikings position, they were normal human beings who did a pirate activity to lead a better life. Viking pirates showed different

---

\* Senior Research Fellow, KIMS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ree aspects ; area and aspect of action, activity after piracy.

Meanwhile, Viking pirates showed several differences with pirates defined in terms of modern international law. Among the satisfying conditions of pirates,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ikings fulfilled *animus furandi*, desire for gain, activities for hatred and revenge, and private ends. Other conditions including attacking authority of the vessels, activities toward private ships, activities in the coast and the land, and illegal terroristic activities toward ships are found in viking pirates. However, Viking pirates do not show the activities in high seas and in the outside of a State's jurisdiction. In addition, it cannot be excluded that they pirated with vessels of regional leaders and the Sovereign, not private ships. Contrary to the definition of concept in terms of modern international law toward pirates, Viking invaded foreign waters, came on shore to foreign land and island, went up-stream the rivers to the back of interior, and attacked churches and abbeys. Strangely, they sometimes settled down in the places where they had pirated.

Today, pirates appearing in history and defined in international law exist simultaneously and separately. It means, the historical nature and the natur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re turning up differently. Historical cases of pirates should be reflected to modern international law. If so, it seems that the clue to solve pirate problems can be arranged. History is the immortal living thing, which not just existed as a past but reflects present.